

대구지방법원

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5타경7916 부동산임의경매		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6. 2. 9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손종욱	<u>전자서명완료</u>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	별지 기재와 같음		최선순위 설정	2010.10.01.근저당권		배당요구종기	2025. 7. 7.	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	
점유자 성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분	점유의 권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증금	차임	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 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 등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	
박현정	지하1 층 73.79㎡	현황조사	점포 임차인	2023.06.03~2 025.06.02	30,000,000	700,000	2023.06.26			
	지하 1층 중 73.79㎡	권리신고	점포 임차인	2023.06.03~ 현재	30,000,000	700,000	2023.06.26	2025.05.30	2025.6.4.	
박현정.	지하1 층 165.29 ㎡	현황조사	점포 임차인	2023.06.03~2 025.06.02.	30,000,000	700,000	2023.06.08.			
<비고>										
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										
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										
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										
비고란										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부동산의 표시

2025타경7916

[물건 1]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288-30
[도로명주소]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범로 183

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근린생활시설, 업무시설
지하1층 근린생활시설 1386.46㎡
1층 근린생활시설, 업무시설 1221.90㎡
2층 근린생활시설, 업무시설 1160.77㎡
3층 근린생활시설 1160.77㎡
4층 업무시설 1160.77㎡
5층 근린생활시설 1160.77㎡
6층 근린생활시설, 업무시설 1160.77㎡
7층 근린생활시설, 업무시설 1160.77㎡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지하층비1호
철근콘크리트조
판매시설(일반계업제공업시설) 269.62㎡
위락시설(무도장) 239.28㎡
위락시설(무도학원) 73.79㎡
제2종근린생활시설(일반음식점) 18.9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288-30
대 1931.8㎡

대지권의종류 : 1. 소유권

대지권의비율 : 1. 1,931.8분의 165.32

감정평가액		840,000,000	
회차	기 일	최저매각가격	매수신청보증금
1회	2026.03.16	411,600,000	41,160,000
2회	2026.04.16	288,120,000	28,812,000
3회	2026.05.12	201,684,000	20,168,400
4회	2026.06.12	141,179,000	14,117,900